

## 양도성예금증서 특약

### 제 1 조 가입대상

제한없음 (단, 은행등록발행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의무가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)

### 제 2 조 가입금액

500 만원 이상

### 제 3 조 계약기간

- ① 증서발행 : 30 일 이상 365 일 까지
- ② 은행등록발행 : 30 일 이상 900 일 까지

### 제 4 조 증서발급

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.

### 제 5 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

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는다.

### 제 6 조 만기 후 이자

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,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 제 7 조 면책

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 이어서 증서를 분실, 도난당한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 8 조 등록발행

-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 「은행법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은행에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
-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, 질권설정 등의 권리행사는 은행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다.
-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다.

### 제 9 조 관련 약관 및 법규의 준용

- ①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 및 준용되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 「은행법」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<부 칙>

- (1) 2019 년 11 월 07 일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전자증권법) 시행에 따라 관련 법규를 변경함.
- (2) 2019 년 11 월 07 일, 만기 후 이자 관련 내용을 추가 명시함.

※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